

동산양도담보 계약서

이 동산양도담보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은 _____년 ____월 ____일자로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1.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4층(여의도동, 금투센터)

2. _____ 사

경기도

전 문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이하 “대주”)는 _____년 ____월 ____일 _____사(이하 “차주”)와 대출금액 금 일억삼천오백만원(135,000,000원), 변제기 _____년 ____월 ____일로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이하 “본건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주는 차주의 대주에 대한 본건 대부거래계약상 채무 원리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담보물을 대주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차주가 본건 대부거래계약상 채무 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이에 한하지 아니하며, 대출 원리금 채무가 변형된 손해배상채무와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일체를 포함한다, 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차주 소유의 물건(이하 “본건 담보목적물”)을 대주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담보권의 설정)

차주는 차주의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건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대주에게 양도하였다.

① 담보한도

- 대출금액의 130% 금 일억칠천오백오십만원 (₩175,500,000)
- 품목, 가격, 수량 등은 별지 목록 기재 담보물과 같다.
- 보관장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산단로 36-14 주식회사 세이프인3

② 피담보채무의 범위

- 본건 대부거래계약상 채무 원리금 기타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

라 차주가 대주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위 채무가 변형된 손해배상채무

- ③ 차주는 전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산단로 36-14 소재의 ㈜세이프인3(이하 “본건 창고”)에 본건 담보목적물을 입고함으로써 대주 앞으로 본건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제3조(본건 담보목적물의 입고, 보관, 출고)

- ① 본건 담보목적물의 입고, 보관, 출고 등은 대주와 제2조의 본건 창고와 사이에 본 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물류창고보관계약(이하 “본건 물류창고보관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본건 담보목적물의 입고, 보관, 출고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③ 대주는 차주가 본건 피담보채무 전부를 상환하였을 경우에만 보관 중인 본건 담보목적물을 양도 또는 출고해 주기로 하고, 본건 피담보채무가 일부라도 상환되지 않은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본건 담보목적물을 양도 또는 출고해 줄 의무가 없다.

제4조(본건 담보목적물의 보관책임)

-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건 담보목적물을 본건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였는 바, 그 보관상의 모든 책임은 차주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② 대주는 본건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본건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아니하며 멸실, 훼손 등 어떠한 보관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 차주는 본건 창고 내의 고온, 습기 등 자연적 현상, 기타 차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본건 창고 내에 보관하는 본건 담보목적물을 관리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에게 대주의 입회를 조건으로 본건 창고의 개방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와 본건 창고의 개방시간 등을 협의하는 등 차주의 본건 담보목적물의 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본건 창고에 보관 중 본건 담보목적물에 곰팡이의 발생 기타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떠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며, 대주는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진술과 보장)

차주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진술 및 보장한다.



- 1. 차주는 본건 담보목적물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 2. 본건 담보목적물에 대하여는 담보권, 우선매수권, 환매권 등 제3자를 위한 어떠한 담보나 압류, 가압류 기타 어떠한 형태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부담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주는 본건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또는 사실적 장애사유나 행사불능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3. 본 계약에 의한 본건 담보목적물의 담보제공이 법령 또는 정부 인허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

으며, 차주와 제3자간 체결된 계약상 제3자에 대한 의무 위반이 되거나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의한 본건 담보목적물에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관청 기타 제3자의 인허가, 승인, 동의 또는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쳤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담보채무 전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차주는 대주에게 피담보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대주와 차주 사이에 같은 날 체결된 본건 대부거래계약서가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 계약서 제5조의 전술과 보장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이에 위반되는 경우
3. 담보 목적물이 분실, 멸실, 훼손되어 채권 보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

제7조(본건 담보목적물의 실행 등)

- ①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차주가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본건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는 경우, 그 즉시 대주는 차주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본건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방법, 가격 등에 의하여 임의 처분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대주가 본건 담보목적물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에 있어 피담보채무의 전액이 상환되지 않고 일부라도 채무가 남게 되는 경우, 차주는 즉시 나머지 전부를 상환하여야 하고, 차주는 대주가 본건 담보목적물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이라도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건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청산금)이 있는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 담보제공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타)

- ① 본 계약서상 모든 약정 및 구속은 본 계약의 당사자들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을 구속한다.
- ②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 합의이며,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없다.
- ③ 본 계약의 일부 규정이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나머지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

런한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대주 :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자당대로 143, 4층(여의도동, 금투센터)

대표이사 최 문 석 (인)



차주 :

사

경기도

대표이사

(인)



재고리스트

<u>상품명</u>	<u>장 소</u>	<u>수량</u>
19 시즌 르샴(패딩), 17~18 시즌 샤인블링(패딩, 코트)	경기도 파주시 적성산단로 36-14 주식회사 세이프인3	3,514EA (363 BOX)

*2021년 월 일까지 입고 예정

